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의결(처리건수) : 5건(원안동의 3건, 수정동의 2건)
- 안건별 심사결과

의안번호	제출일자	회부일자	상 정 내 역	심사결과
552	2004.8.19	2004.8.23	제151회 임시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 (2004.9.9)	원안동의
553	2004.8.19	2004.8.23	제151회 임시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 (2004.9.9)	수정동의
554	2004.8.19	2004.8.23	제151회 임시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 (2004.9.9)	수정동의
555	2004.8.19	2004.8.23	제151회 임시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 (2004.9.9)	원안동의
556	2004.8.19	2004.8.23	제151회 임시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 (2004.9.9)	원안동의

2. 상정일자

- 제151회 임시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2004.9.9) 상정, 의결

3. 제안이유 및 요지

- 가. 제안이유 : 별첨내용
- 나. 주요요지 : 안건별 내용 별첨

4.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안건별 내용 별첨

5. 심사결과

- 서울시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계획 절차로서, 도시계획결정과 변경결정은 실제로 영향을 받는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 결정안이 법규에 적합하고, 시민 이익에 관계되는 결정(변경)안 3건에 대하여 시장 결정안대로 원안동의 하였고, 2건에 대해서는 수정동의하였음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의안번호	552
------	-----

제출일자 2004. 8. 19

1. 안 건 명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2. 제안이유 : 마포구 성산동 368-1일대 자연녹지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임

3. 주요요지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용도지역	면적(m <sup>2</sup>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950	감)1,950	0	
제2종일반주거지역	0	증)23,773	23,773	
자연녹지지역	21,823	감)21,823	0	